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전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1
----------	------

발의년월일 : 2017. 8. 21.

발 의 자 : 전준호 의원 등 20명

1. 제정이유

-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
-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 청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 등을 명확·구체화하는 조례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당사자로서 청년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수립방법)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 (주요내용) 청년 참여확대, 능력 개발 지원,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청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청년정책 계획, 각종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시행.

마.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제20조)

○ 청년시설의 설치,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바.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설치 및 운영.

3. 제정 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5. 비용추계서 : 붙임 3(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붙임 1】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나이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 나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기본이념의 구현 및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시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
-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 사. 청년의 생활안정
- 아. 청년인구 확대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의 실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9조에 따른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

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문화 등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7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맡는다.
-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등에 필

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때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청년정책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들로 안산시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② 안산시청년정책협의체는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청년 관련 행사나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정책제안 및 포상) ① 시장은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기본이념의 구현 및 청년정책의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전준호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3)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 수정안

의안 번호	3041
----------	------

제안년월일 : 2017. 8. 21.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청년의 정의를 수정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 기본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 주요골자

- “청년”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청년지원사업의 범위 부채경감사업을 추가.(안 제8조제2항제8호)
-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청년활동 협의체”로 명칭을 수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 수정안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청년의 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범위에서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을 실현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시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는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시민(시

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8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정책연구·조사 및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용역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청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확대
2. 능력개발과 교육·훈련
3.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4. 주거 및 생활안정
5. 문화 활성화
6.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7. 인구확대
8. 부채경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세부사업 지원)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 가.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
 -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2. 능력개발
 - 가. 역량 발굴 및 함양
 - 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3. 고용확대
 - 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 다. 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
- 4. 주거 및 생활안정
 - 가. 주거 공간 확보방안 마련
 - 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주거기준의 미달주택 거주에 따른 권리피해 구제 방안 마련
 - 다. 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저해 및 생활불안정 요소 발굴과 해소·지원방안 마련
- 5. 문화 활성화
 - 가. 활성화 방안 마련
 - 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6. 권리보호
 -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 추진사업

제3장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 지원

- 제10조(지원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

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청년활동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2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장 청년정책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2. 추진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조사 결과 분석·반영
 4. 제11조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문화 등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3. 청년시설 관계자 또는 종사자
4.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 간에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6조(정책제안 및 보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 및 추진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수 정 안
<p>안산시 청년 기본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라 함은 나이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 나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p>	<p><u>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청년의 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년”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원 안	수 정 안
<p>2. “청년정책”이란 <u>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u></p> <p>3. “청년단체”란 <u>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u></p> <p>4. “청년활동”이란 <u>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p> <p>5. “청년시설”이란 <u>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u></p>	<p>2. “청년정책”이란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u></p> <p>3. “청년단체”란 <u>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u></p> <p>4. “청년활동”이란 <u>청년정책의 범위에서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p> <p>5. “청년시설”이란 <u>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을 실현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시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시설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3조(적용범위 등) ① <u>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u></p> <p>② <u>시는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청년정책과</u></p>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시장의 책무)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기본이념의 구현 및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u>과 시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u></p> <p>제4조(기본원칙) <u>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u></p> <p>제5조(책무) ① <u>시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성</u>과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p> <p>② <u>모든 시민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 사. 청년의 생활안정 아. 청년인구 확대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의 실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추진사업 및 지원</u></p> <p>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8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정책연구·조사 및 개발

원 안	수 정 안
<p>6. 그 밖에 <u>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u></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9조에 따른 <u>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u>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조사</u></p>	<p>6. 그 밖에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u>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u></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7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u>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u></p>

원 안	수 정 안
<p>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u>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업무를 용역으로 의뢰할 수 있다.</p>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원 안	수 정 안
<p>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문화 등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7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산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p>	

원 안	수 정 안
<p>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⑨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p>	<p><삭 제></p> <p><삭 제></p>

원 안	수 정 안
<p>서의 장이 말한다.</p> <p>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의 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p>	<p>제8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청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p> <p>1.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확대</p> <p>2. 능력개발과 교육·훈련</p> <p>3.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및 노동환경개선</p>

원 안	수 정 안
<p>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4. 주거 및 생활안정</p>
<p>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5. 문화 활성화</p>
<p>제17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신 설> <신 설></p>	<p>6.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및 안전</p> <p>7. 인구확대</p> <p>8. 부채경감</p> <p>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원 안	수 정 안
<p>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업</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9조(세부사업 지원)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여확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 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2. <u>능력개발</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역량 발굴 및 함양 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3. <u>고용확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원 안	수 정 안
<p>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다. <u>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u></p> <p>4. <u>주거 및 생활안정</u></p> <p>가. <u>주거 공간 확보방안 마련</u></p> <p>나. <u>주거환경 개선과 최저주거기준의 미달주택 거주에 따른 권리피해 구제방안 마련</u></p> <p>다. <u>경제적 자립, 안전 및 보건,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저해 및 생활불안정 요소 발굴과 해소·지원방안 마련</u></p> <p>5. <u>문화 활성화</u></p> <p>가. <u>활성화 방안 마련</u></p> <p>나. <u>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u></p> <p>6. <u>권리보호</u></p> <p>가. <u>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u></p> <p>나. <u>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u></p> <p>7.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 추진사업</u></p> <p><u>제3장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 지원</u></p> <p>제10조(지원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③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추진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④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원 안	수 정 안
<p>제21조(청년정책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들로 <u>안산시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p>② <u>안산시청년정책협의체는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22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u>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 ></u></p>	<p>제11조(청년활동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u>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p>② <u>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u></p> <p>제12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u>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청년정책위원회</u></p> <p>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u>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원 안	수 정 안
	<p>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p> <p>2. 추진사업의 조정 및 협력</p> <p>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조사 결과 분석·반영</p> <p>4. 제11조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p> <p>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여성·문화 등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p> <p>1.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p>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 <u>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u></p> <p>3. <u>청년시설 관계자 또는 종사자</u></p> <p>4. <u>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u></p> <p>5. <u>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⑤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⑥ <u>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 관련 부서장이 된다.</u></p> <p><u>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u>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 간에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p> <p><부칙 중 “신설 제2조”로 변경></p> <p>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청년 관련 행사나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24조(정책제안 및 포상) ① 시장은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p>	<p>제5장 보칙</p> <p>제16조(정책제안 및 보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p>

원 안	수 정 안
<p>의 범위에서 <u>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기본이념의 구현 및 청년정책의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25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부칙<2017.00.00></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의 범위에서 <u>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7조(표창) 시장은 청년정책의 실현 및 추진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18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부칙</u></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